

가금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의무화 및 벌칙 부과기준 행정명령 발령

가금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(11.28.)함에 따라, 추가적인 발생 차단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동법 제57조(벌칙) 4호에 따른 방역조치 의무화 및 벌칙 부과 기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.

2020년 11월 30일

하 동 군 수

1. 명령사항 및 법적근거

- ①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
 -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이 높아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철새도래지(전국 103개소) : 우리군 금성면 갈사만
- ② 축산차량은 농장·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·운전자 소독 실시
 - 모든 축산차량은 농장 또는 축산시설을 방문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및 운전자 소독을 실시하고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보관하고 소독실시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
- ③ 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
 -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

모두 갖춘 경우가 아닌 전국 가금 사육농장은 사육하는 가금을
방사(방목) 사육금지

- ④ 전통시장 살아있는 초생추·중추(70일령 미만) 및 오리 유통 금지
- (유통금지)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에서는 위험이 높은 기간 동안 살아있는 초생추·중추(70일령 미만) 및 오리의 판매 또는 구입을 금지

2. 처분당사자

- 관내 가금 사육 전 농가
- 축산차량 소유자(운행자)

3. 처분내용

- 가금 사육 관련 방역조치 의무화

4. 처분근거

-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제19조 및 동법 제57조 4호

5. 처분사유

- 하동군 내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 차단 및 타 시군 발생 시 차단방역을 위한 조치 필요

6. 처분기간 : 2020. 12. 1.[화] ~ 2021. 2. 28.[일] 24:00

-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에 따라 추가 연장조치 될 수 있음

7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12. 1. 00시부터

8. 기타사항

-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

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○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

-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(벌칙)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-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대한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 끝.